EU 알레르기 유발 물질 중 그룹명 관련 명칭 및 표시기재 원칙 공지

2026. 01.

□ 배경

○ **유럽에서 「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1545」의 시행**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 56종을 **표시 의무 대상에 추가하여 확대**함

- 기존 25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 물질 외에 56종 추가 → 총 81종
- 일부 성분은 공통 구조를 기반으로 한 그룹명으로 통합 표시 허용

* EU 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1545

- placed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6 (2026년 7월 31일까지 시장 출시 허용)
- made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until 31 July 2028 (2028년 7월 31일까지 유통 허용)

[참고] 우리나라에서는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[별표 4]에 따라 혼합 원료는 구성성분의 명칭을 각각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□ 주요 내용

○ 「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1545」에 따라 그룹명이 부여된 성분을 **추가로 기재하고자 하는 업체가 참고로 활용**할 수 있도록 [붙임]과 같이 국문 그룹명을 안내함

※ 단, 우리나라의 경우 **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[별표 4]에 따라 혼합 원료는 이를 구성하는 각 개별 성분의 표준화명으로 기재**해야 하며, 이에 따라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'향료'와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 (즉, 전성분 표기 시 표준화명 대신 그룹명으로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하기 예시와 같이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표시대상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'향료'로 표시 또는 개별 성분명 표시 후 그룹명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함)

[예시] 전성분 표시 예

OO크림의 전성분이 [A, B, C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향료]이며,

해당 향료의 구성 성분이 [ㄱ, ㄴ, ㄷ, 시트랄[1]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[2], 알파-다마스콘[2]]인 경우

1) 시트랄 : 「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.001% 초과 함유하는 경우 기재 의무

2)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알파-다마스콘 : 「Commission Regulation (EU) 2023/1545」 규정 참고

현 재	⇨	작 성 (안)	
A, B, C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시트랄, 향료[3]	향료에 알레르기 유발성분(유럽 그룹명 등)이 포함된 경우	1안	**A, B, C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시트랄, 향료**
		2안	**A, B, C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시트랄, 향료,** *알파-다마스콘*
		3안	**A, B, C, 다마스크장미꽃추출물, 시트랄, 향료,** *장미꽃오일/추출물(EUG), 로즈케톤즈(EUG)*
		4안	~~A, B, C, 향료~~
		5안	~~A, B, C, 시트랄, 향료, 장미꽃오일/추출물(EUG), 로즈케톤즈(EUG)~~
		6안	~~A, B, C, 향료, 시트랄(EUG), 장미꽃오일/추출물(EUG), 로즈케톤즈(EUG)~~

3) 현행의 표시 기준은 [식품의약품안전처,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지침 안내(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9055호(2019.12.31.)) 참조

※ 유럽 착향제 알러젠 라벨링 관련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(유럽화장품협회) 착향제 알러젠 라벨링 요건에 대한 가이던스 발간 (2023.12.21.)